

case
7

음식물 처리기

요약

사례명	음식물 처리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3319 (2024.05.15.)
사실관계	미국산,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한 후 멕시코에서 멕시코산 부품들과 결합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등 10단계의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인 음식물 처리기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멕시코에서의 제조공정에서 중국산, 미국산 부품들이 멕시코산 부품들과 결합되어 서브 어셈블리로 변환되고, 이를 조립하여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음식물 처리기가 생산되는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⁷⁾

사 례 명 [음식물 처리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3319 (2024.05.15.)

사실관계

요청자	Whirlpool Corporation (대리인: Cassidy Levy Kent USA (LLP))		
제품명	• 전기 구동식 음식물 처리기 4종 (모델명: SKU 80499A-ISE, 80500A-ISE, 80499-ISE, 80500-ISE)		
제품 구성	원산지	구성 요소	총비용 대비 구성 비율
	중국	모터, 관통볼트, 컨테이너 본체 실, 배플이 포함된 마운팅 개스킷, 리벳, 테일 파이프 나사, SKU 80499A-ISE 및 80500A-ISE용 전원 코드 등	45~49%
	멕시코	컨테이너 바디/분쇄 챔버, 모터 커버, 회전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등	29~31%
	미국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배수 서브 어셈블리, 바디 플랜지, 플라스틱 마개, 실란트, 고정식 분쇄 링 등	22~24%
용도	• 음식물 처리용		
완제품 HTSUS	• 8509.80.20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미국산, 중국산 부품들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
 2. 멕시코에서 플라스틱 부품 성형, 프레스 가공, 고정, 나사 체결, 검사 등 10단계의 공정 수행
 - 고강도 플라스틱 수지를 사출 성형하여 컨테이너 바디와 모터 커버 제작
 - 회전식 분쇄 플레이트 서브 어셈블리 제작 및 모터의 샤프트에 부착

7)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모터와 회전식 분쇄 플레이트 서브 어셈블리를 모터 커버에 삽입
 - 고정식 분쇄 장치를 컨테이너 바디에 부착 및 통합
 - 회전식 분쇄부, 모터 서브 어셈블리, 컨테이너 바디, 고정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
 - 조립된 서브 어셈블리에 진공, 누출, 전기 테스트
 - 바디 플랜지와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조립
 - 마운팅 서브 어셈블리, 컨테이너 바디/고정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모터/회전식 분쇄 서브 어셈블리, 배관 키트를 함께 조립
 - 완성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 제품 및 안전 테스트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C.S.D. 90-57*

관련 법령
및 분석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특성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조립 공정을 검토함에 있어, CBP는 조립의 성격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본질(very essence)을 부여하는 부품의 원산지를 함께 고려함

- 일반적으로 본 사안과 같은 제품에서는 모터가 완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며, 모터의 원산지는 모터의 핵심 부품인 스테이터와 로터가 제조된 국가에 따라 결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및 *NY N305251 (2019.08.01.)*

- 더불어,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국가에서 수행되는 서브 어셈블리 공정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사례 미완성 우편 요금계기 생산을 위한 주요 서브 어셈블리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나, 나머지 서브 어셈블리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이들 서브 어셈블리를 연결하여 최종 조립 하는 과정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

판정 중국에서 조립 공정뿐만 아니라 일부 서브 어셈블리 또한 제조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서 행해진 공정이 충분히 광범위하며 복잡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함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16794 (2021.02.02.)*

사례 미국산, 중국산 부품을 캄보디아로 수입하여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산 부품들과 다양한 부품 또는 서브 어셈블리로 가공된 뒤, 최종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로 조립됨

원산지	구성 요소	총비용 대비 구성 비율
중국	배수 하우징, 모터 스테이터, 엔드 벨, 아마추어, 턴테이블, 엘라스토머, O-링, 너트, 각종 라벨, 플라스틱 절연체, 검사 플레이트	50%
미국	보어 베어링, 카본 브러시, 와이어 캡, 파이버 오일, 턴테이블 접착제	4%
캄보디아	배수 서브 어셈블리, 스냅 및 락 마운트, 싱크 플랜지, 스냅 지지 링, 스플래시 가드, 지지 마운트 링, 스토퍼 및 스토퍼 쉘, 호퍼, 하부 쉘, 포장재, 일부 라벨 등	45%

판정 여러 하위 조립품 및 부품들은 모두 정밀하게 제조되고 조립되기 전까지는, 음식물 처리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으며, 조립 과정에서 결합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음식물 처리기로 완성된다고 판정함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결과

☑ HQ H303529 사례 및 NY N316794 사례와 유사하게 본 사안에서 중국산 모터는 멕시코에서의 조립 과정을 거치는 동안 멕시코 및 미국에서 제작된 여러 서브 어셈블리들과 결합되어 음식물 처리기로 변형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갖는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Ⅱ 시사점

- 일부 주요 부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이어도 여러 부품들을 결합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흡수되어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서브 어셈블리들을 조립하여 새로운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 해당 공정이 수행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할 수 있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33319 (2024.05.15.), <https://rulings.cbp.gov/ruling/H333319>
- CBP Ruling HQ H313371 (2021.03.30.), <https://rulings.cbp.gov/ruling/H313371>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Ruling NY N316794 (2021.02.02.), <https://rulings.cbp.gov/ruling/N31679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